

의안번호	2212546
의 퇴 인	박정의원
회 답 일	2025.9.3.
추계번호	25B4727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 26억 8,900만원(연평균 5억 3,8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(안 부칙 제2조)	449	540	541	542	543	74	2,689	538

주: 1. 2026년은 10개월분, 2031년은 2개월분의 추가재정소요

2. 본 추계 결과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2025년도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·운영 방식과 공무원 임금상승률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(위원회 등의 존속기간)	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<u>12년간</u> 존속함	의무지출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(위원회 등의 존속기간)	○	·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제출자료 및 의견을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‘7년간’에서 ‘12년간’으로 연장하는 것임
 - 현행법상 존속기간: 2019.2.15.~2026.2.14.(7년간)
 - ⇒ 개정안에 따른 존속기간: 2019.2.15.~2031.2.14.(12년간)
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추가로 5년간 연장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추계
 - 개정안에 따라 존속기간이 5년 연장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2025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인건비, 운영비 및 사업비로 구분하여 추계함
 - 이때 운영비는 위원회 회의 운영·지원을 위한 제반경비를 포함하며, 사업비는 정책연구비를 의미함
- 개정안에 따라 연장되는 존속기간(2026.2.15.~2031.2.14.)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로 하되, 2026년은 10개월분의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추계하고, 2031년은 2개월분의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추계함

-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및 기관부담요율 전망치¹⁾ 적용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인건비) 인건비는 행정실무원 1명에 대한 보수 및 기관부담금으로, 2025년 예산 기준 보수에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보수액을 추계하고, 이에 기관부담금 요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기관부담 금액을 산출한 후 합산함

– 이때 2026년은 10개월분의 인건비를 추계하고, 2031년은 2개월분의 인건비를 추계함

- (운영비 및 사업비) 2025년 예산 기준 운영비 및 사업비가 추계기간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
○ 다만, 2026년은 10개월분의 운영비 및 사업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2031년은 존속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신규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2개월분의 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(미세먼지개선기획단) 예·결산 현황 : 2021~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2021		2022		2023		2024		2025
	예산	결산	예산	결산	예산	결산	예산	결산	예산
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(미세먼지개선 기획단) 운영 (7032-305)	718	647	551	442	543	484	569	523	537
-인건비	33	33	37	32	37	36	39	34	40
-운영비	595	514	434	338	426	376	380	354	397
-사업비	90	99	80	72	80	72	150	135	100

주: 2024년도 예산은 예비비 4억 8,1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임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1)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및 기관부담요율 전망치(2025. 3.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(%)	2.4	2.4	2.4	2.4	2.4	2.4
기관부담요율(%)	13.066	13.130	13.194	13.286	13.380	13.47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 26억 8,900만원(연평균 5억 3,8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인건비	35	43	44	45	46	8	221
운영비	331	397	397	397	397	66	1,985
사업비	83	100	100	100	100	-	483
합 계	449	540	541	542	543	74	2,689

주: 1. 2026년은 10개월분, 2031년은 2개월분의 추가재정소요

2. 본 추계 결과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2025년도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·운영 방식과 공무원 임금상승률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2025년도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·운영 방식과 공무원 임금상승률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1]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요

(자료: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)

- (목적) 정부 대책 마련*에도 불구하고, 체감할 만한 대기질 개선 효과 부족**에 따라 특단의 대책 필요성에 대한 여론 고조로 위원회 설립('19.2월)
 - * 「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」(2016), 「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」(2017), 「비상·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」(2018) 등
 - ** 2015~2018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

구분	2015	2016	2017	2018
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	26 $\mu\text{g}/\text{m}^3$	26 $\mu\text{g}/\text{m}^3$	25 $\mu\text{g}/\text{m}^3$	23 $\mu\text{g}/\text{m}^3$
연간 미세먼지 나쁨일수	46일	75일	64일	61일

- (현황) 공동위원장(국무총리, 대통령 지명 민간위원장) 포함 40인 이내 위원
 - 정부위원(당연직 18명) : 국무총리(공동위원장) 외 관계부처 장관 등
 - 민간위원(위촉직 18명) : 국무총리 위촉, 민간 공동위원장 등
- (기능)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 심의(법 제10조)

① 종합계획 수립·변경 및 이행상황 점검·평가 ②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·평가
 ③ 미세먼지 저감·관리 및 정책 조정·지원 ④ 국민건강 관리 ⑤ 국제협력 등
- (실적) 본회의(국무총리 주재), 전체회의, 분과회의 등 총 111회 개최

[참고자료 2]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법적근거 및 조직도

(자료: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)

- (법적근거) 미특별 제12조(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) 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.
- 조직 : 1단장(겸임) 1부단장 3과

